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5. 17 선고 2020가합125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2. 3. 27. 접수 제87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7,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소외 C 주식회사에 대한 추심금 지급채권

- 1)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7가단6010호), 위 법원은 2017. 9. 13. ‘D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2) 원고는 2017. 12. 7. 위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D이 이 사건 공정증서(공증인 E가 2016. 10. 20. 작성한 2016년 증제6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92,034,232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7타채7851호), 위 결정은 2017. 12. 15.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 3)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8가합214호), 위 법원은 2018. 11. 2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4) 한편, 소외 회사는 D과 원고 등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9가합11396호), 위 법원은 2022. 1. 13.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3. 2. 24.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 1) 소외 회사는 2020. 3.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는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은 4,4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8788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소극재산 약 145억, 적극재산 약 128억(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약 119억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23. 2. 14. 채권자 F, G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금 지급채권이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금 지급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I(D은 I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사이의 합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주식회사 H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을 완료하거나 위 합의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원고의 추심금 지급채권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원고의 추심금 지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각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소외 회사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을 할 예정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10 판결 등 참조),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등 참조).
-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바, 이러한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그 채권최고액인 4,420,000,000원의 범위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소외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천연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석산부지로서 시가가 220억 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6 ~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20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은 법인의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요건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결정례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선의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기존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 등기가 마쳐지자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8년경 유예한 바 있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위 강제집행개시신청이 취하되는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았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20억에 달한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액의 합계액이 130억 원을 넘는 상황이었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약 119억 원이었다는 것인바,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이 법원)이 취하되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2019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20억에 매도할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제6호증, 을 제16-1호증)만으로 법률상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7.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0. 3. 27. 접수 제87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가현, 판사 서정희, 판사 유철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여수시
 일야 51914㎡(주식회사 지분)
2. 전라남도 여수시
 일야 110479㎡
3. 전라남도 여수시
 일야 118576㎡
4. 전라남도 여수시
 목장용지 22564㎡
5. 전라남도 여수시
 목장용지 10000㎡
6. 전라남도 여수시
 목장용지 17444㎡
7. 전라남도 여수시
 일야 54953㎡
8. 전라남도 여수시
 목장용지 66692㎡
9. 전라남도 여수시
 일야 87681㎡
10. 전라남도 여수시
 목장용지 113㎡
11. 전라남도 여수시
 일야 163257㎡
12. 전라남도 여수시
 목장용지 20001㎡

13.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107㎡
14.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106㎡
15.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88562㎡
16.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35399㎡
17.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204㎡
18.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476㎡
19.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14275㎡
20.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4198㎡
21.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155008㎡
22.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32727㎡
23.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95207㎡
24.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180694㎡
25.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48893㎡
26.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328859㎡
(주식회사 지분)

1) 청구취지 제2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제87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이나,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선행하기로 한다.